

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(안) 심사보고서

2005. 9. 8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9월 1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(2005. 9. 8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김 연 수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【취 득】

- 혜화동 1-21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무상양수 받아 소유권과 관리권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, 무상양수 계약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 시설물을 개·보수하여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임.
-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구입 활용중인 콘도가 직원이 이용하기에 부족함으로 추가 구입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략

5. 討 論 要 旨 : 없음

6. 審 查 結 果 : 원안가결

7. 少數 意見의 要旨 : 없음

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음